

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10. 15 조례 제324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안양시장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·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,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

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 2. 모집·배치팀
 3. 활동관리팀
 4. 활동지원팀
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)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8조의3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, 이를 경기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하고 자료로

활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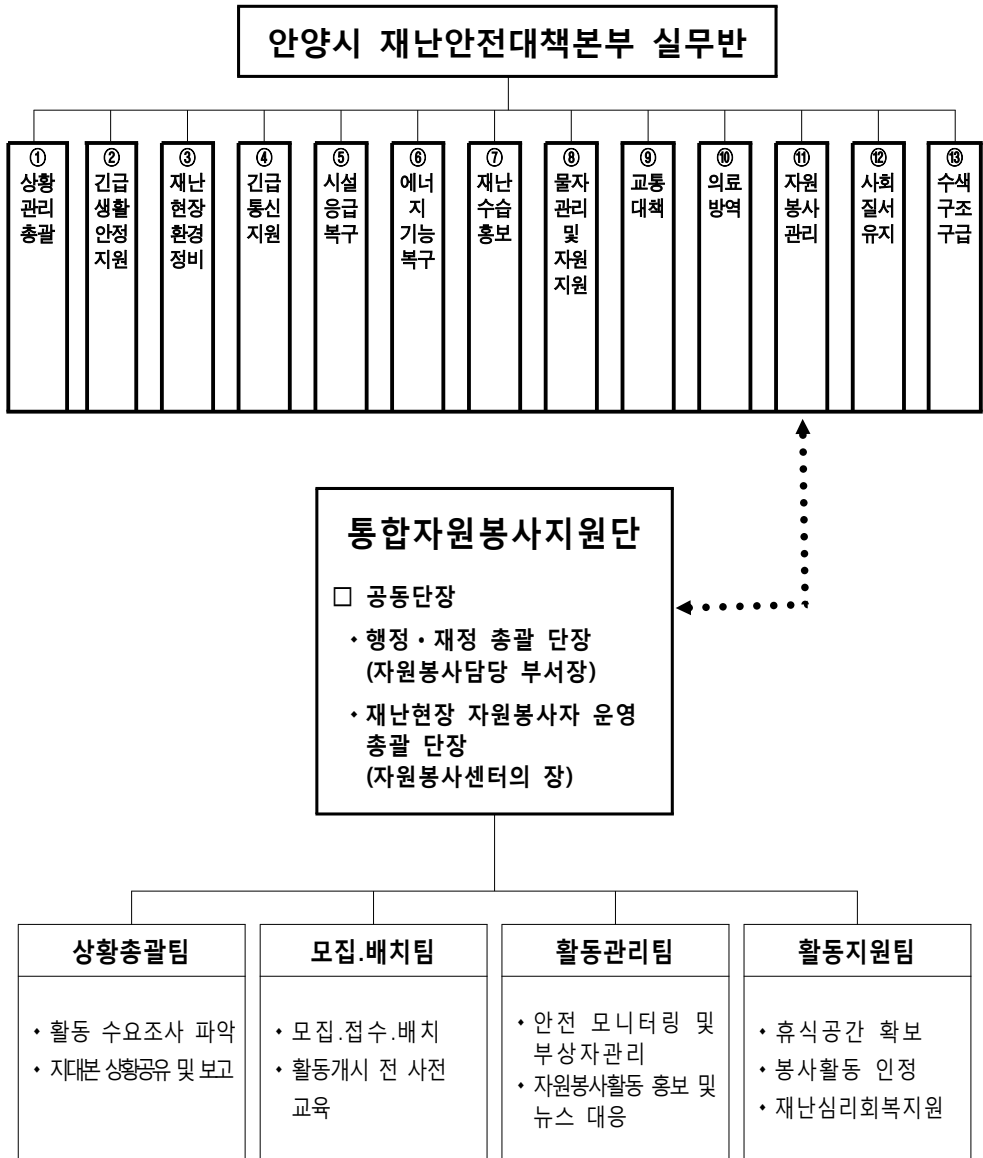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편제

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

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자원봉사 부서의 장)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	민간인 (안양시 자원봉사센터장)	
상황총괄팀	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팀장	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	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모집·배치팀	안양시 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, 지원
활동관리팀	안양시 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
활동지원팀	안양시 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 등)

비 고

-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